

『구미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 재 우 의원 외 11명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경우회 명예를 선양하고, 시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(안 제3조)
- 사업 계획에 대한 사항(안 제4조)
- 정산 보고에 대한 사항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 제15조
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1. 8. 27. ~ 9. 3.) 결과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향경우회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시민안전을 위한 치안 협력과 사회질서 의식 고취를 위해, 지역 재향경우회의 활동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치안에 기여하고 있는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,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경우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을 받지 않도록 교부 및 정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